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31

발의연월일: 2025. 1. 20.

발 의 자:이건태·정태호·김한규

허 영・이개호・조인철

위성곤 • 한민수 • 김준혁

서영석 · 김기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원도심의 쇠퇴와 광역적인 정비의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작년 4월 선도지구 선정에서 국토부는 사업 대상을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으로 한정하여 1기 신도시 살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후 도시 개발을 기대하던 원도심은 오히려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 이 아니냐는 지적을 함.

이에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특례를 부여하 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원도심 지원을 위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원도심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주거 환경이 쇠퇴하고 낙후되어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정의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야 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다.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지정(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라.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마.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정책협의회 설치(안 제9조)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 및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정책협의회를 둠.

바. 사업시행자(안 제11조 및 제12조)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사업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음.

사. 건축규제의 완화,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망 등에 관한 특례 (안 제14조 및 제15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 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원 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아.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안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자. 교육 및 보육 등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반 지원, 보육기반 확충,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활용 등을 할 수 있음.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 노후화, 광역교통망 구축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 원도심의 기능을 향상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미래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며 주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원도심"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주거환경이 쇠퇴하고 낙후되어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는 제외한다.
- 2. "원도심 정비 및 지원계획"이란 원도심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등에 관 한 계획을 말한다.
- 3.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이란 원도심 안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 ·경제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 업
- 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 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 설사업
- 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 의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 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 마트도시건설사업
- 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차.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 4.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원도심 정비 및 지원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직접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원 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을 직접 협의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

- 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지정의 요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해야한다.
 - ② 제6조에 따른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 1.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 2. 지역산업의 쇠퇴, 경제활동인구의 유출 등으로 인해 경제적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 3. 원도심 지역의 비효율적 토지 이용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공간 재 정비가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도심 정비 및 지원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 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2.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지정 목적과 시행 기간
 - 3.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 4.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 5. 교통처리계획
 - 6. 환경보전계획
 - 7. 도시재생 및 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 8.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정책협의회) ①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 제12조(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 ①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 ②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도심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직접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

- 1.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4. 특별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원도심지 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 업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 제13조(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한 지원시책) ①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 3.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 및 시장·군수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 시 필요한 경 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5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기본계획 수립비

- 2.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비
-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 5. 원도심 정비 및 지원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6.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 8.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 9.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 요한 비용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 제17조(상생협약) ①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원도심 정 비 및 지원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 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 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료·사용료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 시설설치비용
-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8.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③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 4.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원도심 교육 및 보육 등 지원에 관한 특례

- 제19조(교육기반의 지원) ①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 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 다.
 -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③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 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학습형 일자리 창출
- 2. 고용과 복지의 연계
- 3. 해당 지역의 현안
- 제20조(보육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 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

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 내 노후·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유 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보칙

- 제2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①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1.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 2.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인가 내용
 - 3. 그 밖에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할 수 있다.
-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나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행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